



제417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에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국회에산정책처에 대한 비공개자료의 제출 근거 마련〉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02호)

2024. 8.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식 · 민병덕 · 정을호 · 백승아 · 정성호 · 부승찬  
황운하 · 서미화 · 김성환 · 문진석 · 이기현 · 염태영  
김재원 · 정준호 · 이병진 · 윤종균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4. 6. 21.

3. 회 부 일 : 2024. 6. 24.

※ 의안번호 : 802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 ·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 ·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의 예산결산 ·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에 정보를 요청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조사 및 분석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처장이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장이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가예산 분석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0조(자료의 요청) -----<br>-----<br>-----<br>-----<br>-----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대해 예결산분석, 재정사업평가, 비용추계, 경제전망 및 분석 등 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다만,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1)에서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①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관련 정보 중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정보, ③ 해당 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⑤ 공개시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현재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기관 등에게 예결산분석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이 요청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항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관련 자료를 보다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에 대한 연구·분석·평가와 국회의원에 대한 의정지원 활동 등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한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 국가안보 등 공익의 보호 등의 취지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국회예산정책처의 원활한 업무수행의 효과와 비공개 대상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법인의 영업비밀 등에 대한 침해 가능성, 국가안보 등 국가적 이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교형량을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대해 자료요청 권한을 가진 국회 소속기관(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중<sup>2)</sup>에서

---

2) 「국회도서관법」 제11조의2(자료의 요청) 관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법」 제10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9조(자료의 요청) 처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만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른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015 |
|--------------|